

2004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해설

구 본 품

행정자치부 세제담당관실

I. 머리말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03년 지방세법령 개정은 현행 세제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지방세 가산세제도 개선과 징세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를 위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승계자동차에 대한 일할계산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조정하면서 2003년 12월 31일자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개정 법률은 2003. 7. 2.부터 2003. 8. 4.까지 관계부처 의견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03. 10. 30.자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3. 12. 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12월 30일에 법률 제7013호로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중 개정령은 2003. 12. 20. 입법예고, 2003. 12. 23.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지난 12월 30일자로 공포(대통령령 제18194호)되었다.

이하에서 2003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요내용과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부과 제척기간 규정 보완(법 제30조의4 제1항)

현행	개정
○ 부과 제척기간 · 일반 : 5년간 · 사기 등 부정행위로 포탈,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 : 10년간 〈추 가〉	- 부과의 제척기간 · 일반 : 5년간 · 사기 등 부정행위로 포탈,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 :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 7년간

〈개정이유〉

국세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는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으로 달리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지방세는 부과 제척기간을 일반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5년 경과시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세와 제척기간 통일

2.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 개선(법 제51조의2 제1항)

현행	개정
○ 서류송달의 방법 · 직접교부 · 등기우편 송달 〈추 가〉	○ 서류송달의 방법 · 직접교부 · 등기우편 송달 ·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고지 하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로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 가능

〈개정이유〉

재산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히 송달하는 납세고지서의 경우

-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등기우편 송달시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반송되어 송달이 어려운 사례가 빈발하고, 이에 따른 고지서 송달 비용의 과다소요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선요구가 제기됨.

※ 미국(뉴욕시), 캐나다(오타와시) 등 선진국에서도 보통우편으로 재산세 고지

감사원에서도 정기분 납세고지서 중 일정세액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2003. 3. 28)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명확화(영 제73조제4항, 제6항 및 제9항)

〈개정사유〉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대법원 결정(2001두11090, 2003. 8. 19, 2002두12762, 2003. 8. 22)이 있으므로 취득시기를 개선·보완하되 관련법령에 의한 취득시기(소유권이전고시일 또는 분양처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함.

4.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영 제75조의 2)

현행	개정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 ----- -----
1. 레저시설 : 풀장, <u>스케이트장</u> ,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1. ----- <u>스케이트장</u> , <u>골프연습장</u>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의 필수시설인 운동시설 및 안전시설과 칠답에 한한다)-----

〈개정사유〉

골프연습장은 담세능력이 있고(50타석 시설비 1,650백만원), 현행 풀장·스케이트장 등과의 형평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건의를 수용함
다만, 영세업자의 조세부담완화 및 과세대상의 명확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골프연습장으로서 20타석이상(체육지도사 채용 규모)을 과세대상을 하고, 필수시설 및 골프연습장용 철탑에 한하여 과세.

※ 필수시설 : 운동시설(타석), 안전시설(그물, 보호망)

임의시설 : 연습 또는 교습에 필요한 기기, 퍼팅연습용 그린 등

- 시가표준액 결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5.1.1부터 과세

5.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중과제도 보완(법 제112조 제2항)

현행	개정
○ 골프장 취득세 5배 중과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u>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함</u>	○ 골프장 취득세 5배 중과세 ·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 <u>사실상 사용 중인 골프장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보아 중과대상에 포함</u>

〈개정이유〉

현재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하는 때에 한하여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골프장 사업자의 경우 골프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었거나, 80~90%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범라운딩을 명목으로 상당기간 사실상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 문제점 발생, 감사원에서도 시범라운딩중인 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성 제기(2003. 3. 28)

※ 시행시기 : 2004. 7. 1.부터 시행

[illegible]

6. 상시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별장제외(법 제112조제2항제1호)

현 행	개 정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u>부속토지</u> .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u>부속토지(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u> .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이유〉

새 정부의 경제정책운용방향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 농어촌주택 취득시 별장제외 방안을 검토기로 결정된 사항이며, 국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농어촌주택에 대하여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토록 하는 규정 신설.

7. 별장제외 농어촌주택의 기준 마련 및 고급주택의 기준인 시가표준액 인상 조정(영 제84조의3제1항 등)

〈개정사유〉

개정 지방세법에서 농어촌주택을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기로 함에 따라 범위와 기준을 정하면서 접경지역 등 일부지역을 광역시 및 수도권지역에서 제외

※ 양도소득세의 1가구2주택 제외 기준

- 대지면적 660㎡이내, 건축물 연면적 150㎡이내로서 건축물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지역,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투기예상지역 등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농어촌주택에 한정

건물과표 현실화가 추진됨에 따라 고급주택의 시가표준액기준이 종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 고급주택 건축물(331㎡) 시가표준액 비중

현 행	개 정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신 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 고급주택 적용 건물의 시가표준액 : 2,500만원 초과

구 분	1974년	1979년	1995년	2003년	개정안
건물기준가액(㎡당)	45,375원	58,988원	145,000원	170,000원	170,000원
고급주택기준(A)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3,500만원
고급주택의 시가표준액(B)	1,502만원	1,953만원	4,800만원	5,627만원	5,627만원
시가표준액대비 (A/B)	66.6%	76.8%	52.1%	44.4%	62.2%

- ㎡당 기준가액이 1995년 145,000원에서 2003년 17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고급주택의 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점 해소 필요.

8.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방법 및 가산세제도 개선, 취득세 기한 후 신고제도 도입(법 제120조, 제121조, 제121조의2 등)

현 행	개 정
○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30일이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 - 다른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도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일률적으로 10% 또는 20%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	○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30일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에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 - 다른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도 신고의무 불이행시 10% 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의무불이행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에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 ○ 취득세의 경우 신고기한 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지 받기 전까지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3헌바16, 2003.9.25)에 따라 취득세의 신고납부방법을 『신고납부의무 동시 이행』에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고, 가산세도 신고불이행 가산세와 납부불이행가산세로 분리하여 차등적용(국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

다른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납부 및 가산세제도 개선

- 등록세(20%), 레저세(10%), 주민세(20%), 주행세(10%), 담배소비세(10%, 30%), 사업소득세(20%), 지역개발세(20%), 지방교육세(10%)

※ 헌법 불합치결정 요지(제121조제1항) : 법 개정시까지 적용중지

- 현행 신고납부 및 가산세제도는 취득세의 징수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가산세 부과조치는 정당하지만,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산세 20%를 적용함은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모두 불이행한 자와 신고는 하고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똑같이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

취득세의 경우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지 받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고불이행가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

9.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신고납부제도 개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가산을 규정 신설(영 제86조 및 제86조의2)

현행	개정
제86조(신고납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명백히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신고 및 납부) ①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사유〉

신고납부동시이행에서 신고 및 납부로 변경(지방세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도 개정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가산율은 국세(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감안)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0. 등록세 과세시 “농지”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영 제89조제2항)

현 행	개 정
제89조(정의규정) ① (생 략) ②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u>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u>	제89조(정의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u>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u> <u>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u> <u>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u> -----.

〈개정사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등기시점과 다를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적용하기 부적합하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착오 또는 과세기준일 이후 사유로 인하여 등기당시 사실상의 지목과 상이한 경우 과세운영상으로는 사실상 지목에 따라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등록세의 성격이 공부상 등기·등록함에 따라 과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등기·등록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등기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서 실제 토지현상이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에 대하여 저율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11. 도난 건설기계 복구등록시 등록세 비과세(법 제128조제5호)

현 행	개 정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 <u>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등록</u>	○ 비과세대상 추가 - <u>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u>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도난으로 말소등록한 이후에 복구등록 하는 경우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 및 일반 자동차의 경우와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되므로,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도난으로 말소된 당해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때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

12. 대도시내 법인설립 중과세 제외대상 추가(영 제101조제1항)

현행	개정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 29. (생략) 20. 해운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 계획에 참여하는 해운업 21. ~ 3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 ----- 1. ~ 29. (현행과 같음) 〈삭제〉 21. ~ 32. (현행과 같음) 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아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개정사유〉

해운산업육성법이 1999. 4. 15 「해운법」으로 통합되면서 해운산업합리화계획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으므로 정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택조합은 대도시내 설립이 불가피하므로 대도시내 중과대상에서 제외 필요(서울시 건의 사항임).

공제조합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방지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현행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인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사업성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의 구성(회원사) 및 소비자 피해보상측면에서 대도시내 설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과제외 업종에 포함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업무(주택저당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의 성격상 금감원, 은행, 회계법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대도시내 설립이 불가피하므로 중과제외업종에 포함 함.

13. 국제출원 상표권 등에 관한 등록세 관련 규정정비(법 제146조 및 제150조의 2)

현 행	개 정
〈제146조〉 ○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u>이전 등록시 등록세 과세</u> ※ 매 1건당 9,000원 〈신 설〉	〈제146조〉 ○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u>이전등록 중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u> ○ 제150조의 3(특별징수) <u>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에 의하여 국내에 지정등록 되는 상표·서비스표의 등록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을 등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상표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등록결정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세를 납입토록 함</u>

〈개정이유〉

국제사무국에 등록된 기초상표권의이전은 일정수수료만 납부하면 국제등록부에서 처리되므로 외국에서도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등 국제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 일본의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99. 12. 14)이후 국제등록부에 의한 등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상표법〉

· 제86조의30 (상표원부예의 등록의 특례)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

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의한다.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에 의하여 국제출원하는 상표는 국제사무국에 등록한 후 의정서 가입국에 지정 통보하여 보호

※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 : 1996. 4. 1시행

의정서 체제하에서는 외국인이 국제출원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 및 제수수료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특허청장이 이체받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국제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해당 등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도록 규정.

14. 주민세 납세지 규정 보완(영 제130조의6제2항)

현 행	개 정
제130조의6 (납세지 등) ① (생 략) ②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를 변경하여 주된 근무지의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근 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제130조의6 (납세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로서 ----- ----- 신근무지를-----.

〈개정사유〉

현재 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를 변경하여 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정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일 현재의 근무지 시·군에서 환부 또는 추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근무형태 등 여건의 변화로 시·군을 달리하는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주민세납세지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업무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15. 주민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입규정 정비(영 제130조의10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
제130조의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생략)	제130조의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현행과 같음)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단서 삭제>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신설>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세자 수가 많은 근로소득·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명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권자가 『납세증명』 발급 등의 필요가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16.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개선(법 제196조의 6 내지 제196조의 8)

현행	개정
○ 자동차 승계취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모두 부과징수(양도인 소유기간분 승계) - 다만, 양도·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시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자동차 승계취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개정이유〉

현재는 자동차 승계취득시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양수자에게 각각 부과하고 있으나, 자동차세의 대장과세원칙상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양수자에게 각각 일할계산하여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

- 일할계산신청제도 도입 초기에는 납세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신청률이 낮았으나, 현재는 신청률이 계속 증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할계산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음.

이러한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일할계산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각각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선

-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되,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도록 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민원 예방

※ 감사원에서도 현행 일할계산신청 제도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기(2003. 3. 28)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대국민홍보 및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2005.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둠.

17. 주행세 법정세율 인상조정(법 제196조의17 제1항)

현 행	개 정
○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u>1,000분의 115</u> 로 한다.	○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u>1,000분의 175</u> 로 한다.

〈개정이유〉

유류세(경유)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소요재원 추가확보를 위하여 2003.6.30 지방세 법시행령을 개정, 현재 주행세 탄력세율을 조정 최고한도인 14.95%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현행 법정세율(11.5%)의 30%범위 안에서 시행령의 탄력세율로 가감조정 가능한 최고 한도까지 세율인상(2003. 6월말)

주행세 법정세율을 인상조정 하지 아니할 경우 2004년부터는 탄력세율을 인상조정할 수 없게 되므로 세율조정 불가피.

18. 주행세 과세자료 통·수보 근거규정 마련(법 제196조의 21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u>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u>

〈개정이유〉

주행세는 교통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통세와 별도로 정유공장(제조장) 또는 수입유류의 경우 세관 소재지 시장·군수(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

이와 같이 교통세와 주행세의 부과징수체계를 달리함에 따라 수입유류 등의 경우 교통세는 세관장이 통관과정에서 부과·징수하므로 누락·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나, 주행세의 경우 납세자인 수입업자 등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세누락이나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개선.

19.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산정방법 개선(법 제234조의15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에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u>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개정이유〉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현재의 종합토지세 과표의 지역간 평준화, 세율체계조정등 시행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06.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20. 도시개발사업용 토지 등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추가(영 제194조의15 제2항 및 제4항)

〈개정사유〉

영림사업중인 보전임지의 임야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일시적인 세부담 완화 측면에서 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2년) 차별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2년간 종전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전기사업용 토지는 사업의 성격이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실질과세원칙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고, 승인 받은 토지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산업자원부의 요구사항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는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되는 한국토지공사 등과 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지 등과의 형평상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

현행	개정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① (생략) ②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 ----- 다만, 도시지역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1. ~ 4. (생략) 5.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 ----- ----- ----- ----- ----- 6. ~ 23. (생략)
<신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21.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규정(영 제194조의16 제3항 내지 제6항)

현행	개정
제194조의16(과세표준액) ①·② (생략)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새로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제499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94조의16(과세표준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지역간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삭제〉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지방세법을 개정(제234조의15제5항)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비율을 50%로 규정.

시행시기는 지역간 평준화, 세율체계 조정 등 시행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2006. 1. 1부터 시행.

22. 지역개발세 신고납부 방법 등 도조례 위임(법 제259조제2항)

현행	개정
○ 지역개발세 신고납부 -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2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납부	○ 지역개발세 신고 및 납부 -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개정이유〉

지역개발세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중 지하수의 경우 과세근거가 되는 지하수 검침(상수도사업본부)이 2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징수하는 하수도료 등 각종 사용료 등과 납기가 달라 납세불편 초래.

※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과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기나 신고 및 납부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도모.

23. 지방세 감면규정 조정(법 제5장)

1)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창고 등에 대한 감면확대 (법 제261조제2항)

현행	개정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u>취득세의 100분의50</u> 을 경감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u>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50</u> 을 경감

〈개정이유〉

자경농민의 세부담 경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등록세를 50%경감함으로써 미등기 축사·창고 등에 대한 등기 활성화 촉진.

2) 광주민주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추가(법 제270조제1항)

현행	개정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 국가유공자가 대부를 위해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가 대부를 위해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기시 등록세 면제

〈개정이유〉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대부금을 지급받는 광주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반하므로 광주민주유공자에게도 동일한 혜택 부여

3) 국가유공자단체인 4·19혁명공로자회에 대한 감면추가(법 제270조제4항)

현행	개정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면제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면제

〈개정이유〉

“4·19혁명공로자회”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단체로 규정되어 2001. 9. 1. 설립되었으므로 다른 국가유공자단체와 동일한 세제 혜택 부여

4) 『경찰공제회』의 회원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추가(법 제273조제5항)

현 행	개 정
○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u>군인공제회</u> · <u>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u> 및 <u>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u>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100분의 50 경감	○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u>군인공제회</u> · <u>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u> · <u>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u> 및 <u>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u>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100분의 50 경감

〈개정이유〉

경찰공제회의 회원용 공동주택사업은 무주택회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성격으로서, 군인공제회 등과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에 대하여도 조세형평상 동일하게 세제지원.

5)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연금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추가(법 제273조제6항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u>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연합회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u> - <u>별정우체국직원의 복리증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u> - <u>자산운용 및 급여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0분의 50 경감</u>

〈개정이유〉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급여관리 및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별정우체국연합회의 급여재정의 안정(책임준비율 향상) 및 급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과 형평성차원에서 지원이 필요.

6)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강화(법 제276조제3항)

현 행	개 정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 취득세·등록세 등 감면 ○ 취득일부터 3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감면된 지방세 추징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 취득세·등록세 등 감면 ○ 취득일부터 3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이유〉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용도(유흥주점 등)로 사용하는 경우가 현지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시설지정을 취소한 경우가 아니면 감면한 조세를 추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규정 강화.

※ 적용례 : 이 법 시행당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함.

7) 경형 승용자동차 취득·등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법 제268조의2)

현 행	개 정
〈신 설〉	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cc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개정 이유〉

에너지 절감 및 건전소비문화 정착 등을 목적으로 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경형 승용자동차(비영업용)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 2003.2.5 신영국의원외 4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중 일부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심사시 반영함.

8)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 규정 정비(법 제280조제6항)

현 행	개 정 안
○ 한국무역협회가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장용으로 신축·증축한 건축물을 2002년 12월31일까지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면제 ○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관련시설 중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삭 제〉

〈개정이유〉

아시아·유럽정상회의장용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2002.5.13.에 완료되어 감면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조문정리차원에서 등록세 면제규정 삭제.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필요성 등을 자율적으로 검토하여 감면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므로 개별조문에서는 삭제.

9)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 축소(법 제281조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100분의50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0분의50경감	○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100분의50 경감

〈개정이유〉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총 32개사)는 많은 당기순이익을 남기고 있어 감면시한 종료가 타당하나, 향후 공급망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적은 낙후지역(강원권, 충주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감면 축소.

지역난방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국가에너지정책사업으로서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하고,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 민간업체의 참여가 거의 없는 분야이고, 쓰레기소각열, 매립가스 등 미이용에너지의 사용으로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는 배관장치산업으로서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인 도시가스관과 과세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세 경감신청.

10)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법 제282조)

현행	개정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내에 <u>정당한 사유 없이</u>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개정이유〉

취득세·등록세 등 전액면제 혜택에 비추어 2년간의 의무사용 기간은 감면목적 달성차원에서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본래 감면취지인 R&D 촉진·지속의 효과도 있으므로 의무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되, 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조문에 삽입.

1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법 제287조제2항)

현행	개정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u>서울대학교병원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u> -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면제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u>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u> -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면제

〈개정이유〉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는 타국립대학교병원과 함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기존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의 하나로 소속되어 있다가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속 감면 필요.

12)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법 제288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u>산업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u>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면제

〈신설이유〉

산학협력단은 산업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있는 산업인력 양성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대학의 하부기관으로 설치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고, 해산시 잔여재산이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만 투입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지방세감면대상인 학술연구단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규정을 신설.

13)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공급용 토지에 대한 감면축소(법 제289조제1항)

현 행	개 정
○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u>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u>	○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u>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u>

〈개정이유〉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는 많은 당기순이익을 남기고 있어 감면시한 종료가 타당하나, 양 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공공사업용 부동산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점차적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는 현행대로 면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세목인 종합토지세만 우선 과세 전환하는 것으로 개정.

14)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을 위한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축소(법 제289조제2항)

현 행	개 정
○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u>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u>	○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u>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u>

〈개정이유〉

한국수자원공사는 많은 당기순이익을 남기고 있어 감면시한 종료가 타당하나, 공사가 현재 시행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조성용 토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성격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조세부담증가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점차적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세목인 종합토지세만 우선 과세 전환하는 것으로 개정.

Ⅲ. 맺음말

이 번 지방세법령 개정은 지난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제기된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사항과 민원발생 사항 등을 모두 모아 2003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토론회에서 선정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각계각층에서 제기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반영하고, 2003. 9. 25. 헌법재판소의 취득세 가산세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신고납부방법 개선 및 가산세제도 개선사항을 추가하여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농협·수협중앙회 등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전환 및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지역 확대 부분 개정안에서 삭제, 의원입법안으로 이미 제출되어 있던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부분 추가 등)되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는 과정을 거쳐 공포되었으며 개정 법령은 2004. 1. 1부터 시행된다.

2004년의 지방세법령 개정 주요내용은 참여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부동산보유세제(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